

읍·면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공고

예천군 2022년도 봄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일

예천군수



1. 모집인원 : 86명 예정(감시원 66명, 진화대 20명)

※ '응시자격 및 선발자격 요건' 해당자 없을 시, 선발 대상이 없을 수 있음

2. 근무(예정)기간 : 2022. 2. ~ 2022. 5.(산불방지대책본부 종료시까지)

※ 기상상황 및 예천군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종사업무

☐ 감시원

- 가.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초소 근무 포함)
- 나.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다.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 라. 산불취약지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 작업
- 마. 산불 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진화 활동(야간산불 포함)
- 바. 그 밖에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 예방·방지 활동 및 기타사업 등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가. 산불 감시 및 계도활동
- 나. 산불 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진화활동(야간산불 및 뒷불감시 포함)
- 다. 산불취약지 등 산불요인 사전제거 사업
- 라. 산불 장비의 유지관리 및 각종 산불 예방·방지 활동 업무의 보조
- 마. 그 밖에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불예방사업 및 산림사업 시행

4. 응시자격 및 선발자격 요건

- 가. 모집공고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예천군이고, 현재 예천군에 거주 중인 자로서 신체건강한 자
 - 나. 상시 근무 가능한 자(주말·공휴일 포함)
 - 다. 자동차, 이륜차, 휴대폰 등 산불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 라. 지역실정을 잘 알고 산림보호에 사명감이 투철한 자
 - 마.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국가유공자, 최근 5년 기준 산림관련 표창
 - 응시연령 : 20세 이상 65세 이하인자 우선 선발
 -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많은 자(※주민등록본 상 동일 세대 등재자에 한함)
- ※ 증명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부과되지 않음.

5. 선발예외기준 및 반복참여 제한 <별지 참조>

- 가.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업무특성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병이 있는 경우 및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여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작업 투입에 어려움이 많은 자는 선발하지 않음.
- 나.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지방재정일자리사업 지침 의거)
- 다. 무전기 및 단말기 사용 불가한 자 참여 제한
- 라.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마.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자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가. 기 간 : 2022. 1. 3.(월) ~ 2022. 1. 10.(월) 18:00까지
- 나. 접수처 및 접수방법: 근무하고자 하는 읍·면사무소의 방문·우편접수
- 다. 원서교부 : 접수처 및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7.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체력검정)

- 가. 서류전형 및 체력검정(직무수행능력 평가)
 - 체력검정 : 등짐펌프 착용 후 2km 도착시간 측정 등(이와 유사 체력검정으로 대체 가능)
 - 직무수행 : 현장사진 촬영 후 사진 전송, 위반행위자 적발고지서 작성 등
(직무수행 관련 사전교육 실시 후 평가)

- 감시수단 : 감시 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여부

8. 근로조건

가. 임 금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73,280원/일

나. 복 지 : 4대보험 가입(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근무형태

- 주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원칙이며 기상 및 일몰시간, 야간순찰근무 등 여건에 따라 조정
 - ※ 1주 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됨
 - ※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시는 반드시 출동
 - ※ 휴게시간은 12:00~13:00 (1시간)이며, 여건에 따라 조정
- 임금 등은 개인출력일수에서 기준 지급, 지각조퇴에 실 근로시간 기준지급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는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라. 휴일

- 우천 시 또는 산불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일에서 제외함(임금 없음)
- 주말, 공휴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근무에 따른 평일대체 휴무실시)
- 법정휴일 이외에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 등 정부 지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함.
 - ※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적용(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다만,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9.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가. 고용기간의 장은 관계공무원 등의 정당한 임무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자를 퇴출 할 수 있음.

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1회 경고, 2회 퇴출

- 산불감시활동을 태만히 하여 책임순찰구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산불신고를 늦게 한 경우

- 산불감시 활동에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
(무단결근,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산림 내 흡연, 각종선동, 위해, 협박 등)
-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즉시 퇴출

- 산림 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에 소각행위를 목인한 경우
- 소각행위로 인한 근무구역 내 산불 발생(감시탑 근무자 제외)
- 범법행위를 한 경우(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 작성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에 있습니다.
- 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자 제외)
- 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결원 발생 시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접수된 인원 중 미 선발된 인원에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모집계획은 예천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으로서 연속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아. 면접시험(체력검정)시 활동이 편한 신발 및 복장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체력 검정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운동 및 체력 보완으로 각종 사고 방지
- 자. 기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읍·면사무소별 세부 일정에 따라 원서접수기간, 체력검정 등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유선 혹은 방문 문의 바람

11. 모집 시행 일정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시험구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2022. 1. 3. (월) ~1. 10. (월) 18:00 까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체력검정)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추후 공지

※면접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보(유선 혹은 문자)

12.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자격증, 면허증 각 1부(해당자만)

라.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관련 확인서

마. 채용신체검사서 1부(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 2021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자들은 제출 불필요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54-650-65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응시원서 1부.
2.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4. 응시원서 작성 요령 1부.
5. 취약계층의 범주 및 제출서류 1부. 끝.

[별표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 참여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2.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미동의()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취업여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업기간	20 . . . ~ 20 . . .		
	그밖의 경력			
주요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자격증 /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명		취득 / 수료시점	
전문가인 경우	자격(), 기타() *상세히 기술			
구직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희망() 희망하지 않음 ()
현재 참여 중 정부지원 사업	① 참여사업명		② 시행기관	③ 참여기간
				20 . . . ~ 20 . . .

- ① 본 신청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족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 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2021년 월 일

예천군수 귀하

산불감시원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성명						연락번호		일반)			
주민등록번호								휴대 폰)			
주소											
주요 이력 사항			세대주여부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인)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취업 관련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실업 기간	20 . . . ~ 20 . . .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업 일용직 주부, 기타		
산림 관련 교육이수		교육명		교육일수		비고		차량소지 승용, 승합, 트럭, 오토바이, 기타() (차량번호 :)			
		1.		주							
		2.		주							
산림분야 종사경력 (산불감시, 산림 보호강화사업 등)		기간: 사업명:						산림 관련 자격면허			
기타 특이 사항 (본인)		(예 취기, 기계톱 사용 여부, 이외 특기사항 등)									
상기 본인은 2022년도 산불감시원 모집에 지원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지원 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가. 성 명 : 한글 정자로 기재합니다.
- 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다. 연 령 :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 라.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 마. 경 력 : 산불관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고, 다른 공무원임용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 바. 기 타 :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1> 제한 사항

《 반복 참여자 제한 》

-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인적 속성이 있는 자의 경우 반복참여를 허용
 - 65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 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총합하여 계산

📁 산정기준 예시

- ❖ '22.5.1일이 참여시작 예정일인 경우 '22.5.1~'21.5.1 (1차년도), '21.5.1~'20.5.1 (2차년도), '20.5.1~'19.5.1 (3차년도)로 구분하고,
👉 각 연도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합산일이 180일 초과 시 해당연도 1년 참여자로 간주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기간(1년) 이후 무조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 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의 예시

-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반복 참여 처리방법 》

- 개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반복참여자가 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
- 반복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자원 봉사를 진행하는 일자리'이거나, 그 외 사업에서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 ①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② 참여자가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

《 기타사항 》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인해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참여자 결원 발생 등으로 재공고 시부터는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 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참여 배제
-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 포함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 판단

○ 소득, 자산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첫 공고 시부터 채용 가능

※ 취업취약계층 우선 채용

○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

※고혈압, 심신질환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22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선발합니다.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제출서류 》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별도 기준 설정)

* 정확한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19년 최저보험료 납부대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확정 후 재통보 예정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② 장애인 :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 미혼여성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선발합니다.